

37고합 1205호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등

변론요지서

피고인 노무현

부산시 서구 토민동 2가 10-19 변호사 문재인 노무현
법률사무소 전화 255-5511 번
전극수 256-3137 번
257-0456 번

즉 법률을 민주주의의 제원칙에 충실히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는 법률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공간을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만 사법에 의한 민주화,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부의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정당행위

경찰관들의 잔혹한 고문에 의하여 대학생이 사망하였을 때, 최루탄에 의하여 시민과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더구나 그러한 슬픈 일들이 민주화를 촉구하는 웅동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그 점에도 공권력은 그 진상조차 은폐하려고 할 때, 그러한 죽음에 대하여 이도하고, 분노하고, 학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저발의 방지를 촉구하는 여론을 환기시키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라면 옳고 정당한 일입니다.

특히 지식인은 그러한 일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6-3137 번
전극수 255-5511 번 257-0456 번

이는 너무도 자명한 진리이므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한 지식인이 그러한 과정에 참여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며,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집적과 층폭이 결국 소외 6·29 선언을 낳았고

민족의 지선이 의한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며, 나아가 새로운 민주화 시대의 희망을 냈습니다.

만약 6·29 선언 이후 지금까지의 시대적 흐름이 바람직한 박학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건들은 공로라고 평가될지언정 범죄로 평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시실들은 모두 협법 제 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의해되거나 않는 행위 즉 정당 행위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 퍼스한 갖가지 사건에 관하여 디디적인 사면 복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러한 행위를 이 정당 하였다는 사회적인 확인인 것입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6-3137 번
전극수 255-5511 번
257-0456 번

3. 구성 요건 해당성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헌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 여부

(가) 이 조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구성 요건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막연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어 위헌이라 함이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따라서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나) 그치지 않더라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집회, 시위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주장을 받아 들여

단하고 각력하기 요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또는 함께 장소를 이동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 시위 특히 옥외 집회, 시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5-5511 번
노무현 256-3137 번
전극수 257-0456 번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은 집회, 시위를 금한다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상치하므로 집시법은 원칙적으로
집회, 시위를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시위에 대하여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함은
보통 집회, 시위에서 따르게 마련인 사회적 불안 정도와는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대단히 큰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즉 네온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거나 박법에 있어서 총상의 집회, 시위와는 달리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때만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집회, 시위들은 전술한 바와같이 고문 또는
최루탄에 의한 대학살과 시민의 죽음에 대한 이도, 항의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5-5511 번
257-0456 번
노무현 256-3137 번
전국수

관심교양, 재발방지, 민주주의의 실현등을 목적으로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히 폭력적인 수단등이 사용된 바
없으므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시위가 될 수 없을니다.

특히 곳소사실 제 2 항의 사건은 유족과 조문객들이 열광미사후
장례(喪禮)를 한 거이므로 (그 러기에 공소장 기재와 같이 구호를
외친 바도 없읍니다.)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고사하고
집회, 시위의 범주에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라) 이점에 관하여 한가지 부연하면 공소장 자체에 의하여도
'현저히'라는 구식 요건은 인정 되지 않읍니다.
이전에 곳소사실 제 1 항의 경우 기재된 행위는
"고문추방, 추모 준비 위원회"라는 어깨띠 두르고, 통행인의
빈번한 도로를 점령하여, 이국기를 제작하고, 드높하고,
추도 사하고, 구호 외치고, 길바닥에 앉아 "이국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는 등 하였다는 것인바,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6-3137 번
전국수 255-5511 번
257-0456 번

도로 점령이란 통상의 옥희 집회, 시위에도 당연히 수반되는 것일뿐 아니라 집시법에 집회, 시위의 금지장소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저히'의 요건이 되지 못하며, 나머지 행위들이 통상의 집회, 시위와 다를 바 없음은 더 이상의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소 사실 기재는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유죄라는 전도된 사고 방식에 입각한 것인바, 여기에는 집시법 위반 사건은 무조건 유죄를 선고하여 왔던 그간의 법원의 판례에도 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공소는 무죄임은 물론이나 그에 앞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니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데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의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 주최 여부

(과) 집회, 시위의 주최자가 함은 사람들을 집회, 시위에 초대하거나 또는 외적 준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헌법학계의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5-5511 번
257-0456 번
노무현
전극수

본 헌법은 전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과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주최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단순히 참석한 후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인 사람에게는 신고의무가 있을 수 없읍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 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이 집결한 후에 참여하였다가 사회적 신분 띠문에 어깨띠를 두르고 사람들의 앞에 섰고, 사회자로부터 추도사를 부탁받게 되어 사전 준비 없이 즉석에서 추도사를 하게 된 것 뿐이며,

공소 사실 제3항의 경우 역시 사제단의 뒤를 따라 카토릭 센터까지 행진하여 온 시민들이 카토릭 센터 앞에서 해산하지 않고 있던중 누군가의 제의에 의하여 토론회가 시작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얼굴이 알려져 있는 피고인을 사회자로 지목 하므로 즉석에서 사회를 맡게 되었을 뿐임이 명백합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5-5511 번
256-3137 번
전극수 257-0456 번

을 위하여) 개최된 회의' 시위에서 물질적 혐오를 하는 사람과는
다른 행사를 행사에서 피고인이 일반 참가자와는 구별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터한 행위를 집회·시위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신고 의무 위반 여부

(가) 사전 계획없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48시간 이전의 신고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대부분 주최자가 없으므로, 신고할 주체도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면

48시간 이전에 미리 계획한 집회·시위 외에는 모두 위법이라는

결론이 되므로 헌법상의 꾼 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만니다.

또한 신고 의무의 본질 역시 질서 문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옥외 집회·시위의 특성상 주최자와 행정관청이

서로 협력하여 집회·시위가 평온하고 질서있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최자에게 부과한 협조 의무일뿐 집회·시위 자체를

제약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6-3137 번
전극수 255-5511 번
257-0456 번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5-5511

256-3137 번 전화 257-0456 번

따라서 신고의무 위반이란 사전에 신고 할 수 있음에도 고의 또는
악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만 해당되고 신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우발적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그런데 공소 사실 제 1 항의 집회·시위는 사전에 계획된
대각사에서의 집회가 경찰의 봉쇄로 불 가능 해지자 경찰의
봉쇄선에 의하여 차단된 시민들 간에 우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며,
공소 사실 제 3 항의 집회는 천주교 부산 교구 사제단의 특별미사후
사제단을 따라 카톨릭 센터 앞까지 행진 하였던 사람들이 혜산
하지 아니한 채 우발적으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으로서 각 사전
계획 없는 우발적 집회, 시위임이 기록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고 의무 있는 주최자도
아니거나와 이상의 집회·시위가 신고를 요하는 집회·시위도
아니므로 신고 의무 위반이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5-5511 번
전국수 256-3137 번
257-0456 번

500 韓國 朝鮮의 韓

(1) 자식등 박해죄에 있어서 장식을 박해한다 함은 객관적 요건으로
첫째, 자례식, 운구, 매장, 입관등 구체적인 장식절차를 박해
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박해행위가 의식의 집행중 또는 그 집행과 밀착 불가분한 단계에서 행하여 질 것이 요구 되며,
주관적 요건으로 장식을 박해한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우선 피고인은 장례 이틀전인 87. 6. 26. 12:00경 현지를 떠난 후로는 장례 문제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하여는 무관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공모 공동 저범 이론에 의하여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 양 공소장에서 주장하나 기록상 공모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함으로 억지에 불과합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6-3137 번
전국수 255-5511 번 257-0456 번

1. 차기 장례의 제도

같은 고동 안의 옛을 동안하고 피고인은 장례를 듣기 위하여
노조, 유족, 근로자들 현지 및 재야 인사등과 함께 장례명칭,
장지, 장례일정, 장례 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나름 대로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기도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제3자적 입장에서 의견제시
또는 권유였을 뿐 노조와 유족 측에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장례 절차를 마음대로 이끌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읍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장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바
없을 뿐 더러 주관적으로 장식 방해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읍니다.

가사 고동 안의 피고인의 행위가 나중 의식의 집행에 무언가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의식의 집행중 또는 집행과
밀착불 가분한 단계가 아니었고 또한 구체적인 장식절차에
있어서의 행위도 아니므로 장식 방해의 객관적인 요건에 해당
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6-3137 번
전주수 255-5511 번
257-0456 번

(1) 제3자가 개입금지 규정에 있어서의 개입금지의 대상은 노사간의 일체의 고섭 행위가 아니라 파업등 단체 행동으로서의 쟁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협상을 하는 단계까지는 쟁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피고인이 현지에 있을 당시 대우조선의 근로자들은 망 이석규의 장례기간이었고, 쟁의 행위 중 이었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즉 쟁의 행위중 위 막인이 사망하자 노조 위원장은 장례기간중의 쟁의 행위의 중지를 선언하고 회사측과의 교섭도 중단 하였으며, 근로자들은 동성장소를 회사구내에서 병원으로 옮기고 임금 인상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일체 중지 하였읍니다.

따라서 위 막인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 준비를 위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쟁의 행위는 일시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6-3137 번
전극수 255-5511 번 257-0456 번

그리고 그 행동의 근로자들의 행동의 성격이 장례준비의

성격과 쟁의 행위의 성격을 겹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기타 재야 인사들이 관여한 부분은 장례 준비 부분이었고
노동 쟁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3)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6개항의 요구 사항 중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전 3항 뿐이었습니다.

즉 기록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등 재야인사들은
장례의 전제로써 6개항 중 전 3항을 제시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결부된 후 3항을 추가 삽입하여 6개항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 무기 연기라는 발표 역시 피고인이나 재야 측에서

노조 측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야와 노조 연석 회의에서는

장례 준비의 미비 등 때문에 기존의 5일장을 7일장으로 바꿀 것을

의논 하였을 뿐인데 노조 위원장이 압력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자회견시 6개조 건이 타결되지 않으면 장례를 무기연기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6-3137 번
255-5511 번
전극수 257-0456 번

이념과는 상관없이 경의를 뛰어넘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례와 근로조건을 걸부 시킨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근로조건의 문제에 대하여는 회피하는 자세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공소 사실 4의 4 항에 기재된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와같이 발언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유사한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이 쟁의행위에

대한 기입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4. 맹음 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에 관하여도 얼마후 사면, 복권이 행하여 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합의 시대니 민주화의 시대니 하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구 시대의 마지막 잔재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온전의 형식으로 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에 담겨진 사회적 의미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6-3137 번
전극수 255-5511 번
257-0456 번

부인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읍니다.

1988. 2.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문재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노무현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19 변호사 문재인 법률사무소 전화 255-5511 번
전극수 256-3137 번
257-0456 번